

수산물 품질인증 (연장)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단체명	구성원	
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생산계획	품목(품종)	생산기간(양식기간)	출하기간
	생산해역	생산계획량 톤	
	포장(공장·양식장) 소재지		
인증신청 내용			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4조제2항,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,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의 품질인증(연장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,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.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나.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	수수료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에 따 른 수수료(뒤쪽에 수입인 지를 붙일 것)
	2.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품질인증서 사본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수수료

※ 수입인지 붙임란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